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822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박우성(기소), 김성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가 2022. 4. 29. 이혼한 사람으로서 2022. 5. 20.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00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이하 '이 사건 아이스박스'라 한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경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E생 아들 및 F생 딸)를 두었고, 불상의 시점부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기존 공동 거주 아파트'라 한다)에서 생활해 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경부터 피고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불화를 겪다가 2021. 12.경부터 피고인이 별도 장소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별거 이후 기존 공동 거주 아파트에 있던 물건 중 자신이 필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이를 요청하여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4. 29.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당시 별도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없이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던 기존 공동 거주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들에 대한 친권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20. 피해자와의 협의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첫 면접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존 공동 거주 아파트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 사건 아이스박스를 들고 나와 같은 날 자녀들과 소풍을 가는 데에 사용하였다.

5) 피해자는 바로 다음 날인 2022. 5. 21. 이 사건 아이스박스를 필요로 하여 자녀들에게 소재를 물어봄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6) 피고인은 2025. 3.경 피해자를 명예훼손, 스토킹범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25. 5.경 피고인을 이 사건 아이스박스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아이스박스를 발견한 후 경찰을 통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8) 공소사실 기재 아이스박스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2020년 여름 무렵 세트상품으로 26,500원에 구매했던 것이고,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 근무해 왔으며 현재 연봉은 5,500만 원 정도이며, 피해자는 대학병원 직원이다.

나.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8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약 1년 사이에 피고인의 부정행위 발각, 급격한 불화, 별거, 협의이혼을 연이어 경험하면서 기존 공동 거주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생활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별거 중 필요 물품을 가져가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한 직후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소품을 가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종래 공동생활재산이었던 이 사건 아이스박스를 가져갔던 것이고, 그것 이외에는 이 사건 아이스박스 점유·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이 없었다.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이스박스 대여를 요청받았더라면 이를 거부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반환을 요청하였더라면 이를 거부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 더욱이 이 사건 아이스박스는 구매 시점이나 구매 당시 가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치가 대단히 경미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 피고인의 위 아이스박스 취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3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이후에야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면서 이 사건 아이스박스 취거 사실을 문제로 삼고,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이스박스를 자신이 보관하



고 있음을 지적당하자 곧바로 경찰을 통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이스박스 취거 사실을 망각한 탓에 이를 반환하지 못했고 여기에 피해자의 무대응까지 더해지면서 그러한 상태가 장기화되었을 여지가 충분하고,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이스박스를 장기간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안경록 _____